

산타 마리아 시
재무 부서 | 공과금 요금고지서 부서
연체계정 수도공급 중단 정책

<https://www.cityofsantamaria.org/city-government/departments/finance-department/utility-billing>

산타 마리아 시 (“시”)는 이전 고지기간 동안의 수도공급에 대한 월간 공과금 고지서를 발행합니다. 공과금 고지서는 우편 발송일이 납부기일이며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1 일 오후 5 시까지 206 East Cook Street 의 시의 공과금 고지 부서에서 납부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연체로 간주됩니다.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0 일째 되는 날 시가 납부금을 받지 못하면 그 계정은 연체로 간주됩니다. 서비스가 중단되기 최소 15 일 (업무 일 기준) 전에 시는 서면 중단 통지를 우송합니다. 고객의 계정이 60 일 동안 연체된 경우 상원 법안 998 호에 따라 미납으로 수도공급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연락처

연체로 인한 수도공급 중단을 피하거나 연장을 요청하거나 대안적 납부 일정 또는 분할 납부방법을 요청하려면 가능한 빨리 공과금 고지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전화: (805) 925-0951 내선. 2217 (영어) 또는 내선. 2218 (스페인어)

이메일: utilitybilling@cityofsantamaria.org

직접 방문: City of Santa Maria
Finance Department
Utility Billing Division
206 East Cook Street
Santa Maria, CA 93454

서면 중단 통지:

시는 요금미납으로 수도 공급이 중단되기 최소한 15 일 (업무 일 기준) 전까지 우편으로 고객에게 연락하기 위해 합리적인 성실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 서면 중단 통지는 계정에 지정된 고지서 수신 주소로 우송됩니다. 고지서 주소와 수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의 주소가 다른 경우, 수도공급 주소로 “거주자” 앞으로 두 번째 서면 통지가 발송됩니다. 서면 중단 통지서는 최소한 다음을 포함합니다.

- 고객의 이름과 수도공급 주소
- 연체 금액;

연체계정 수도공급 중단 정책

- 납부기일 (수도공급 중단을 피하기 위해 지불 또는 지불 약정을 그 때까지 해야 하는 날짜):
- 연기/대안적 납부 일정 또는 할부 상환 계획 신청 절차에 대한 설명;
- 공과금 고지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
- 임대인-임차인 관계이고 임대인이 기록된 고객인 경우 세입자 / 입주자는 임대인의 연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시의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 시의 수도공급 중단 정책에 대한 웹사이트 링크
- 미납으로 인한 수도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논의할 수 있는 시의 연락처 정보.

서면 중단 통지가 우편으로 전달불능으로 반송되는 경우, 시는 거주지를 방문하고 서면 중단통지서를 문에 걸어두기 위해 합리적이고 성실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해 서면 단절 통지에 명시된 날짜에 오후 5 시까지 모든 연체 수도 요금 및 관련 수수료를 시가 수령해야 하는 데, 그 조건은, 본 정책에 따른 항소를 하는 경우 공급중단은 연기되지만, 추가 요금이나 위약금이 누적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스터 미터를 통해 공급되는 개별 미터 거주지의 세입자 / 입주자

개별 미터 거주지의 세입자 / 입주자는 계정의 서비스 주소에서 "입주자"앞으로 작성된 상기 서면 통지를 받습니다. 이 통지는 수도공급이 중단되기 최소 10 일 전에 제공됩니다.

공급지 다세대 주택의 마스터 미터를 통한 세입자 / 입주자

마스터 미터를 통해 공급받는 다세대 주택의 세입자 / 입주자는 아파트로 우송된 편지를 받거나 문에 걸어둔 서면 통지를 받게 됩니다. 어떤 경우건, 이 통지는 수도공급이 중단되기 최소 10 일 전에 제공됩니다.

대안적 납부 일정/분할 납부 계획

연체된 후 60 일 안에 공과금 납부를 할 수 없는 고객은 연체로 인한 수도공급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대안적 납부 방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고지 기간으로 연장되는 납부 약정은 분할 계획으로 간주됩니다. 모든 분할납부 계획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고객이 서명해야 합니다. 분할 납부 계획은 고지서의 원래 날짜로부터 12 개월 이하의 고객이 정의한 기간 동안 미납금 잔액을 분할 상환합니다. 분할 납부금은 고객의 현재

연체계정 수도공급 중단 정책

고지서와 합산되며 그 납부기한이 적용됩니다. 고객은 분할 상환 계획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후의 각 고지 기간의 요금을 납기일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고객은 분할 납부 계획에 따라 연체료를 지불하는 동안 그 후의 미납요금에 대해서는 추가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주거용 수도공급은 다음 중 하나의 상황에서 숙박 시설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서비스 공급중단에 대한 최종 통지(도어 행거)가 게시된 후 영업일 기준 5 일 이내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분할 납부 계획 또는 대안적 납부 일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분할 납부 계획 또는 대안적 납부 일정을 수행하는 동안 고객이 60 일 이상 현재 주거용 수도공급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수도공급 재개

시는 수도공급중단으로 인한 연체금 및 연체료 납부 다음 날이 종료되기 전 수도공급을 재개하기 위해 합리적인 성실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정규 업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 시부터 오후 4 시까지 (공휴일 제외)입니다.

고객이 근무 시간 외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경우 시의 단독 재량에 따라 정규 업무 시간 외에 수도공급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관계의 입주자

거주지, 구조 또는 공원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운영자 사이에 임대인-임차인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계량된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 구조, 모빌 홈 공원, (보건 및 안전법 17008 조에 정의 된 대로) 노동 수용소의 입주자는 연체 계정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시의 고객이 될 권리가 있습니다.

계정이 연체되고 거주자가 시의 고객이 되기를 원하는 단독 주택 의 거주자는 시의 고객이 되기 전에 먼저 임대인-세입자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은 임대 또는 임대 계약서, 임대료 영수증, 거주자가 그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정부 문서 또는 민법 1962 조에 따라 공개된 정보를 제한 없이 포함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구조 또는 공원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운영자 사이에 임대인-임차인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계량되지 않은 별채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 구조, 모빌 홈 공원, 또는 (보건 안전법 17008 조에

연체계정 수도공급 중단 정책

정의 된 대로) 노동 수용소의 입주자의 경우, 시는 각각의 입주자가 수도공급 조건에 동의하고 시의 수도공급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입주자를 고객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명 이상의 입주자가 그 후의 수도 공급요금에 대해 기꺼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시가 인정하거나, 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주자에게 공급을 종료하는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이 있는 경우, 시는 시의 조건과 요건을 충족한 입주자에게 수도를 공급할 것입니다.

거주지 중단 예외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주거용 수도공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 고객 또는 고객의 임차인이 (복지 및 기관 법 조항 14088 조 B 의 1 항, A 목에 정의된 바와 같이) 거주지 수도 공급 중단이 주거용 수도가 공급되는 곳의 입주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거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는 1 차 진료 제공자의 인증을 제출한다.
- 고객이 수도 시스템의 일반 요금고지 주기 내에서 주거용 수도료를 지불할 재정적 능력이 없음을 증명한다. 고객의 가구 구성원이 CalWORKs, CalFresh, 일반 부조, Medi-Cal, 보충 안전 소득 / 주 보충 보조금 프로그램, 또는 여성, 유아 및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을 현재 수령하고 있거나 고객이 가구의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 미만임을 선언한 경우 고객은 주거지 공급 수도요금을 납부할 재정적 능력이 없다고 간주됩니다.
- 고객이 모든 연체금의 납부 등 본 정책과 일치하는 분할 납부 계획 또는 대안적 납부 일정을 기꺼이 받아 들인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미납 잔액 분할 납부 또는 대안적 납부 일정을 제안하게 됩니다. 시는 고객이 수행할 납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해당 납부 옵션의 매개 변수를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상환 옵션은 12 개월 이내에 미납 잔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고지서 검토 신청

고지서 발급 후 45 일 이내에 서면 검토 청원서를 아래 연락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메일: utilitybilling@cityofsantamaria.org

우편: City of Santa Maria
Finance Department

연체계정 수도공급 중단 정책

Utility Billing Division
206 East Cook Street
Santa Maria, CA 93454

직접: 시청 납부 드롭 박스 또는 공과금 고지 카운터 (위의 주소)

공과금 고지과장이 검토하기 전에 전체 고지서를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검토 후 서면 의견이 발급됩니다. 고지서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고객은 다음 고지서에 적용되는 고지 크레딧을 받거나 고객이 서면 검토 요청을 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과금 고지과장의 결정은 결정 후 15 일 이내에 공과금 부장 또는 재무 부장에게 서면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수령 후 30 일 이내의 합리적인 시간 내에 공과금부장 또는 재무 부장이 심리합니다. 이 결정은 최종적이며 추가 항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0 년 1 월 27 일 최종 업데이트